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231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년 11월 28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출자·출연기관 경영효율성과 자율적인 운영을 보호하고, 예산과 결산서의 의회 보고가 법령에 따른 의무조치가 아니어서 보고를 제출로 수정하고, 제출 의무자도 법령과 맞도록 해당 기관으로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출자·출연기관은 예산성립·변경 후 15일 이내에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함(안 제22조의 2제1항).
- 나. 출자·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(안 제22조의2제2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다. 기 타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2조의2(예산 및 결산의 제출) ① 출자·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출자·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2조의2(예산 및 결산의 보고) 시장은 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 출자·출연기관이 제출한 예산 및 결산서를 지체 없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22조의2(예산 및 결산의 제출) ① 출자·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출자·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예산 및 결산의 제출) ① 출자·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출자·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원안	개정안
<신설>	<p>제22조의2(예산 및 결산의 보고) 시장은 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 출자·출연기관이 제출한 예산 및 결산서를 지체 없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22조의2(예산 및 결산의 제출) ① 출자·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출자·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